

로얄제리 • 프로폴리스 안전성 규격기준 신설

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이 없었던 로얄제리와 프로폴리스의 안전성 규격기준이 신설됐다.

식품공전은 지난해 8월 13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에 로얄제리 및 프로폴리스는 벌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고시했다. 식품공전에 따르면 '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국제 식품규격위원회에도 잔류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 중 항생물질 및 합성 항균제

에 대하여 축·수산물(유, 알 포함) 및 벌꿀(로얄제리, 프로폴리스 포함)의 잔류 기준을 0.03mg/kg으로 적용한다.'로 되어 있다. 이에 따라 로얄제리와 프로폴리스 생산과 판매 시에는 벌꿀과 같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프로폴리스와 로얄제리의 규격기준은 다음 <표>와 같다. **양봉**

◆ 프로폴리스

(건강기능식품공전: 개정 2008. 09. 22)

식품의약품안전청 규격 (건강기능식품 공전)		
항 목	규 격	비 고
성 상	고유의 색채와 향미를 가지며 이미·이취가 없어야함	
총플라보노이드	원료성 제품 : 표시량 이상	
	최종제품 : 표시량의 80~120%	
피라-쿠마르산	확인	
계피산	확인	
납(mg/kg)	5.0이하	
디에틸렌글리콜	불검출	
대장균군	음성	

◆ 로얄제리

구분	성분	수분(%)	조단백(%)	산도(mL)	10-DHA	대장균
	생로얄젤리	65.5~68.5	11.0~14.5	32~53	1.6 이상	음성
	동결건조 로얄젤리	5.0 이하	30.0~41.0	-	4.0 이상	음성

※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: 벌꿀 기준 동일 적용
- 발표 : 2008. 08. 13. (식품공전)